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elf-Regulation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Private Sector by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Seoul Autonomous Region

오세민*, 박지현**, 이상호*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평택대학교 사회복지과**

Se-Min Oh(osm4600@naver.com)*, Ji-hyun Park(Jihyunpark@put.ac.kr)**,
Sang-Ho Lee(uuielsh@nate.com)*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향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민간위탁 | 사회복지시설 | 자치법규 | 기초자치단체 |

Abstract

In this study, as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academia and relevant industrie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s relating to such delegation by Seoul was analyzed for systematic supply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find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s that will be enacted or amended by local gover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lf-regulations of Seoul based on the self-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s of May 1, 2015,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eps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oposed by Hyangsun Choi, in terms of presence of clauses and cont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sed: first, clarity in description of application criteria and relevant facilities and dual system of the delegation agencies; second, improvement in criteria for selecting the delegation agencies and the head of committee; third, clauses related to superv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fourth, overall improvement of clauses related to evaluation and review of deleg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more transparent evaluation.

■ keyword : | Contracting | Social Welfare Facilities | Local Laws and Regulations | Local Government |

I.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국가 재정 및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또는 비전문성 등 주로 공공영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고비용·저효율의 비대한 정부의 다이어트를 위한 개혁의 논리[1]로써,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발전적인 모습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과제로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 개선 및 민간행정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기관이나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행정지도와 감독권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히 개발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띄는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이 보유한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활용,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2].

그러나 현재 위탁운영 방식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부문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민간부문이 일방적으로 공공부문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인 위계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식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위탁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사회복지서비

스의 전문성,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현장과 학계에서는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선정기준 마련,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자치법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근거 및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2]. 이러한 실정에서 199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연구가 학계에서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민간위탁 결정요인(김도엽·김상구, 2005; 최홍석, 2002; 추병주, 2008; 한상미·이상균, 2009; 현승현·윤성식, 2011)이나 민간위탁 운영과정(박순애, 2002; 박윤희·박천오, 2011; 송광태, 2005; 정윤길, 2010)과 관련된 연구만이 다수 존재할 뿐,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개정 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과 도입배경

민간위탁이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25], 서비스의 공급결과 대가 지불의 역할은 정부나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정책수단이다[12]. Savas(1992)는 민간위탁이란 민영화의 한 형태로 일련의 계약과정을 통해 정부가 민간에게 공공서비

스의 사무전반을 위탁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식[13]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위탁은 계약을 통해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서비스나 상품의 전달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3호에서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1980년대에 들어 미국과 영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공공 부문의 지나친 팽창과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압박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비판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속되던 행정관리상의 팽창주의를 저지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정부를 추구하자는 요구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민영화 논의로 이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보다 조직 및 기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용이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48년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시작하여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환경, 위생,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어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작은정부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영화나 민간위탁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민간위탁이 일반화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14].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위탁과정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위탁은 민간부문과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

는 민간부문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평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헌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의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15].

특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함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은 민간위탁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데서 위탁이 이루어지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과정 및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하거

나 혹은 새로운 기관에 위탁하는 최종단계까지를 말한다[16].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단계를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권기창(2004:187)은 계약체계→관리체계→보상체계[17], 노용오(2002:13)는 민간위탁업체선정→지도감독→재협약으로 민간위탁 과정을 3단계로 분류[18]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간위탁의 과정을 너무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세부사항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송권수(2002:23)는 공모→선정위원회 구성→선정→계약으로 4단계로 분류[19]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는 재계약 즉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어 민간위탁 전반의 과정과 단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최항순(2003:206)은 위탁방침결정→수탁자모집→수탁자선정→행정기관의 지도감독→재위탁으로 5단계로 분류[12]하였다. 한편, 박중훈(2003:156)은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 위탁대상기능의 기존 수행상태에 대한 분석→민간위탁 소관중앙관리부처 협의의→위탁대상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위탁대상 기능에 대한 입찰공고 및 설명회→신청접수→입찰자에 대한 심사 및 대상사업자 선정→계약요건협상 및 체결→위탁실행→위탁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와 재계약으로 10단계로 분류[20]하였다. 이는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과정의 설명이 용이하나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항순(2003)이 제시한 단계[12]에 초점을 두고 민간위탁의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위탁방침결정이다. 이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둘째, 수탁자모집이다.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모집방법이나 모집공고, 대상, 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업이 요구된다. 셋째, 수탁자 선정이다. 수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위원의 비율, 인원, 자격요건 등)과 선정기준(기준항목,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탁자가 선정되며,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서의 사회복지시설 운

영에 관한 권한을 지닌다. 넷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주체인 행정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사업계획에 따른 시행정도 등을 통해 전반적인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다섯째, 재위탁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주체인 행정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을 결정하거나 수탁자가 변경된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방법이나 위원회 구성, 재위탁 절차 등에 관한 과업이 요구된다[12].

3. 선행연구 검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측면으로 ① 민간위탁 결정 요인, ② 민간위탁 운영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위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으로써,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 등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수탁자의 권한 하에 수행하도록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장경쟁 여건이나 재정적 압박, 정치적 요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홍석(2002)은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대해 자치단체의 유형(시, 자치구, 군)재정자립도, 부채규모 등이 민간위탁 확대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4], 김도엽·김상구(2005)는 민간위탁 결정요인으로써 자치단체의 유형과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장의 연임여부가 영향을 미친다[3]는 점을 주장하였다. 추병주(2008)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대해 공무원의 규모와 도시화율이 영향을 미치며, 시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군은 1인당 지방세 분담이 영향요인임을 분석[5]하였다.

둘째, 민간위탁 운영과정 즉, 위탁과정상의 민과 관의 갈등이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

로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정윤길(2000)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위탁과정을 입찰과정과 경쟁, 계약자 선정, 지도감독과 평가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11]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은 비용절감보다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고용안정의 문제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적응문제, 계약 해지 시에 기존 시설투자 보상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재계약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박순애(2002)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 재협약 과정으로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시설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탁기간을 장기화할 것과 장기적으로 양여권 계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치법규에 공정한 선정심사 내용을 명시하며, 계약서에 성과수준 및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명문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8]. 송광태(2005)는 민간위탁의 계약과정과 재계약과정의 경쟁성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과반수가 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성과평가 없이 재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와 홍보, 입찰과정에서의 평가기준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내부 인사 비율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10]. 박운희·박천오(2011)는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임자-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위탁과정에서의 심사위원회 구성기준과 심사기준 등 운영관련 사항들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에 재정적 위험분담이 불분명한 점, 기존 운영법인에 유리한 제한경쟁으로 진입장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도출하였다[9].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민간위탁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규범과 민간위탁 공급 및 성과 측면에서의 접근, 사례를 통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과정 즉, 단계에 근거하여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과업을 중심으로 조항의 내용분석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타 자치단체에 제정 혹은 개정 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을 통해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최항순, 2003 재구성)를 기반으로 1단계(위탁방침 결정)를 제외한 2단계(수탁자 모집)부터 5단계(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민간위탁 절차에서 1단계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분석대상이 되는 총 21개의 자치법규를 탐독한 결과, 위탁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또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의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① 수탁자모집 단계에서는 모집공고사항을 중심으로 적용시설의 유형과 위탁기간, ② 수탁자선정 단계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단계에서는 주기와 결과 처리방법, ④ 재위탁 단계에서는 재위탁 기간 및 기준, 횟수제한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 과업(구분 항목)의 경우, 최항순(2003)의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와 내용을 토대로 분석항목을 구성, 이를 통해 자치법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에 대한 항목이 부재함과 동시에 항목과 그 내용의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자치구의 지역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치법규의 내용을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여부와 조항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자치법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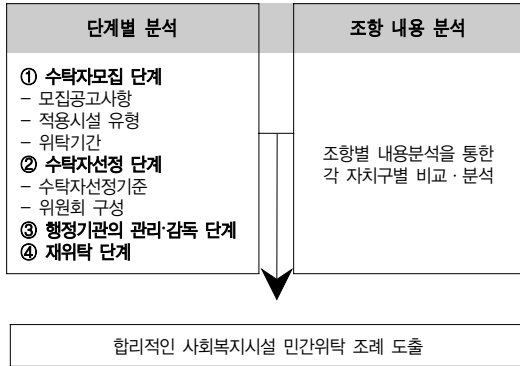


그림 1. 분석틀 도식

2. 분석대상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총 25개이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련한 자치법규를 마련한 지역은 21개로서 이러한 동향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써, 21개(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노원, 도봉 등)의 자치구에서 규정하고 있다.

둘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이는 구로구를 비롯하여 총 4개(금천, 은평, 종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총 21개 자치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채택었으며, 각 지역별로 알파벳 기호를 부여하여 단계별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표 1. 조례의 입법 지역별 분석

조례형태	내용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중구, 중랑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구로, 금천, 은평, 종로

IV. 분석결과

1. 수탁자모집단계

1) 모집공고

수탁자모집 단계에서 모집공고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유형이나 위탁기간, 수탁자선정기준, 재위탁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21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모집공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A구와 G구, O구의 경우 시설의 위치와 명칭,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위탁기간, 위탁대상 및 주요사무에 대해 고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C구는 시설위치와 명칭, 위탁기간을 규정, U구는 시설의 위치와 명칭, 위탁기간, 위탁대상 및 주요사무,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 고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B구를 비롯한 16개 자치구에서는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집공고 현황

구분	수	지자체
① 시설위치 및 명칭	5	A,C,G,O,U
② 수탁자 명칭 및 대표자	3	A,G,O
③ 위탁기간	5	A,C,G,O,U
④ 위탁대상, 주요사무	4	A,G,O,U
⑤ 수탁자격	1	U

2) 적용시설 유형(적용 대상)

적용시설 유형(적용 대상)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A구를 비롯한 12개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자치구의 경우 적용대상을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자치구에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민간 법인에서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거나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배제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해놓은 것은 향후 자치법규의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3. 적용대상

구분	수	지자체
① 아동복지시설	1	C
② 청소년복지시설	2	C,E
③ 여성복지시설	2	C,E
④ 장애인복지시설	4	C,D,G,N
⑤ 노인복지시설	4	C,D,E,G
⑥ 사회복지관	8	D,E,F,G,N,Q,S,T
⑦ 장애인복지관	1	Q
⑧ 노인복지관	2	Q,T
⑨ 가정복지센터	1	G
⑩ 사회복지시설	12	A,B,H,I,J,K,L,M,O,P,R,U

3) 위탁기간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A구의 경우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여 신규위탁은 5년, 재위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 자치구의 경우,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지 않다. 각 자치구의 위탁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구와 T구의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구, S구는 3년 이내, B구, H구, I구, J구, K구, O구, P구, Q구, R구는 5년 이내, L구는 5년, F구와 G구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구와 M구, N구의 경우, 위탁기간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장과 학계, 정책부서 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14]에서 위탁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비록 한계가 있으나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신규위탁기간을 3년으로 설정할 경우 수탁자가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간은 2년여로 이 기간 동안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위탁기간

구분	수	지자체
① 3년	3	A,D,T
② 3년 이내	2	E,S
③ 5년	2	A,L
④ 5년 이내	10	B,H,I,J,K,O,P,Q,R,U

2. 수탁자선정 단계

1)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A구와 K구, P구, T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구, G구, O구는 각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구와 D구, H구, J구, L구, R구, U구는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Q구의 경우, 신규위탁과 재위탁으로 구분하여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규위탁자 선정기준에 대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과 재정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위탁의 경우 사업수행성과(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탁자의 운영 건전성과 공신력(수탁기간 중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여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Q구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더불어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 폐기물 처리나 주차장 운영 등 영리적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어 사무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22].

표 5. 수탁자 선정기준

구분	수	지자체
① 재정능력	10	B,D,H,I,J,L,M,Q,R,U
② 공신력	10	B,D,H,I,J,L,M,Q,R,U
③ 사업수행능력	9	B,D,H,I,J,L,Q,R,U
④ 평가결과	7	B,D,H,L,Q,R,U
⑤ 기타	2	M,Q
⑥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4	A,K,P,T
⑦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	F,G,O

2)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선출 방식

위원장 선출방법은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째, 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한 후 위원장을 지명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방식은 B구와 D구, H구, I구, J구, L구, Q구, R구에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한 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형태로써 이는 E구, N구, P구, U구에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행정참여가 주된 목적임을 감안하였을 때 위원장을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위원장을 호선하게 된다면, 전문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인 등을 최소화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위원장 선출방식

구분	수	지자체
① 지명방식	8	B,D,H,I,J,L,Q,R
② 호선방식	4	E,N,P,U

(2) 위원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B구와 D구, H구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자치구 의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법률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I구, J구, L구, R구, U구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자, 법률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구는 공인회계사 1명,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2명,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4명, 관계공무원 2명으로 자격유형을 세분화하여 인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는 위원의 자격별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에 따른 인원이거나 비율 등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비록, 201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3]에서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1호부터 제4호까지를 참고하되, 가능한 민

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의 적절한 참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7. 위원자격

구분	수	지자체
①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12	B,D,E,H,I,J,L,N,P,Q,R,U
② 자치구 의원	5	B,D,H,N,Q
③ 공익단체 추천자	9	B,D,H,I,J,L,Q,R,U
④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12	B,D,E,H,I,J,L,N,P,Q,R,U
⑤ 법률전문가	11	B,D,H,I,J,L,N,P,Q,R,U
⑥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3	E,N,P
⑦ 기타	2	E,P

3.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단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시설과 서비스를 수탁받은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위탁의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조항 분석 결과, 조사 및 장부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감사 및 특별감사, 기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자치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조사 및 장부검사와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조항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항목의 경우 시설공사 및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내용, 횟수 등)의 조항이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김경혜(2000)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보고나 감독횟수, 간섭이나 규제의 엄격함에 대하여 민간부문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의 비전문성 내지는 과도한 업무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24].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대행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공공부문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인 위계관계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종속적인 대행자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적인 동반자관계의 형성[22]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단계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구분	수	지자체
① 조사장부검사	18	A,B,C,D,E,F,H,I,J,K,M,N,P,Q,R,S,T,U
② 결과에 대한 조치	17	B,C,D,E,F,I,J,K,L,M,N,P,Q,R,S,T,U
③ 감사 및 특별감사	1	L
④ 기타	3	I,P,Q

4. 재위탁 단계

재위탁 단계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위탁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을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재위탁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총 6가지 사항으로 재위탁에 관한 횟수,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 및 심의, 재위탁 신청기간, 재위탁 기준, 재위탁 여부 통지 시기 등에 대해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구와 D구, H구, P구는 재위탁 횟수(한차례)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심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I구와 K구, L구는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심의와 재위탁 신청기간(6개월), J구와 T구는 재위탁 횟수와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심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달리 재위탁 횟수를 2회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Q구와 U구의 경우 재위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한

계가 따른다[7].

표 9. 재위탁에 관한 사항

구분	수	지자체
① 재위탁 횟수	7	A,B,D,H,J,P,T
②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심의	13	B,D,E,H,I,J,K,L,P,R,S,T,U
③ 재위탁 신청기간	7	I,J,K,L,N,R,T
④ 재위탁 기준	2	Q,U
⑤ 재위탁 여부 통지시기	2	Q,U
⑥ 기타	1	S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기관이나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행정지도와 감독권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개발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방식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①모집공고에 관한 조항의 보완이 요구된다. A구를 비롯하여 G구와 O구, U구의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와 명칭, 수탁자 명칭 및 대표자, 위탁기간, 위탁대상 및 주요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자치구의 자치법규에서는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립 및 운영목적과 추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적합한 수탁자의 자격기준과 수탁자 선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22]. ②자치법규의 적용시설 유형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의 유형에 관한 조항을 분석한 결과, A구를 비롯한 12개의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 자치구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록 자치구에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어 자치법규 상에 제한을 해놓거나 혹은 현재 자치구 내에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도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설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자치법규 적용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③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A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A구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기간을 구분하여 신규위탁 5년, 재위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의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이처럼 신규·재위탁의 기간을 구분한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 예로 사회복지시설의 신규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개관되는 6개월 이전, 개관 후로 시설이 정착하는 6개월 가량의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신규 수탁자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2년 채 되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설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운영이 어렵고 전문적 운영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수탁자 선정 단계는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 구성이 분석대상이 되는데, ①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항 보완이 요구된다. Q구를 제외한 다수의 자치구에서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구분 없이 응찰업체의 재정능력이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적격한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규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여 신규위탁은 수탁자의 재정능력이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재위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나 수탁기간 중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여부,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근간으로 자치법규 상 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E구와 N구, P구, U구는 위원회에서 호선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아닌 민간위탁의 목적이 민간의 행정참여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어 좀 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겸비한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요인 등을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의 개선이 요구된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은 주로 조사·장부검사와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내용과 횡수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대행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아닌 공공부문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인 위계관계로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종속적인 대행자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적인 동반자관계의 형성[15]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남용되지 않도록 횡수를 제한하고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의 주체를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아니라 감사전문, 회계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의한 고객평가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위탁 단계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위탁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을 토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분석 결과 재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이나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 재위탁 신청기간, 재위탁 기준, 재위탁 여부 통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Q구와 U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는 재위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나 프로그램 내용 등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현장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져 재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초점을 두고 자치법규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타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의 발전적 모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를 주요 대상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에 따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법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헌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 단계를 기반으로 각 조항의 내용을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여부와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각 개별 자치법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체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민간위탁 관련 조항들이 명칭에 걸맞는 세부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수탁자 선정기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합한지 등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손숙옥, 손경숙, “지방정부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춘천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2호, pp.61-89, 2007.
- [2] 유정원, 맹두열, 백민희, 엄지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3.
- [3] 김도엽, 김상구,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영향요인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2권, 제1호, pp.53-76, 2005.
- [4] 최홍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15권, 제2호, pp.221-240, 2002.
- [5] 추병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공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6] 한상미, 이상균, “지방자치단체의 특징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3호, pp.423-447, 2009.
- [7] 현승현, 윤성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경쟁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pp.5-27, 2011.
- [8] 박순애,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분석 및 관리개선 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1권, 제4호, pp.37-69, 2002.
- [9] 박윤희, 박천오,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실태

에 관한 진단 : 경기도 K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pp.79-101, 2011.

[10]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7권, 제2호, pp.45-69, 2005.

[11]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pp.155-172, 2000.

[12] 최항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Vol.17, No.1, pp.197-219, 2003.

[13] E. S. Savas, *Privatization in Hawkworth, M, and M Korgan Ed Encyclopedia of Government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1992.

[14] 공창숙,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6권, 제3호, pp.109-129, 2011.

[15] 이상호, 박정훈, 오세민,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준에 관한 연구 : 이용시설 중심,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2011.

[16] 허남식,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7] 권기창,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권, 제1호, pp.183-202, 2004.

[18] 노용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시사회복지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9] 송권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0] 박중훈,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21] <http://www.elis.go.kr/>

[22] 이봉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

[23] 보건복지부, *201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14.

[24] 김경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25] 최성락, 황혜신, 차성중,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10, pp.274-285, 2011.

저 자 소 개

오 세 민(Se-Min Oh)

정회원



- 2011년 2월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5년 2월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팀장

<관심분야> : 지방행정,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

박 지 현(Ji-hyun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과(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5월 :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복지전달체계

이 상 호(Sang-Ho Lee)

정회원



- 1999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9년 8월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5년 2월 ~ 현재 :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사무국장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